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교통 · 에너지 · 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서민·영세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2년 4월 30일까지 휘발유와 경유 등에 대해 한시적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 탄력세율을 인하한 조치를 2022년 7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3. 14. ~ 4. 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2022년 7월 31일까지는 리터당 423원으로 한다.

제3조의2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2022년 7월 31일까지는 리터당 300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11월 12일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율은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의2(탄력세율)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제3조제1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529원. <u>다만, 2022년 4월 30일까지는 리터당 423원으로 한다.</u></p> <p>2. 제3조제2호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75원. <u>다만, 2022년 4월 30일까지는 리터당 300원으로 한다.</u></p>	<p>제3조의2(탄력세율) ----- ----- ----- -----.</p> <p>1. ----- ----- --. <u>다만, 2022년 7월 31일까지는 리터당 423원으로 한다.</u></p> <p>2. ----- ----- --. <u>다만, 2022년 7월 31일까지는 리터당 300원으로 한다.</u></p>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331